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56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 박주민 · 모경종 · 황명선

이건태 · 김남근 · 이해식

박민규 • 한민수 • 염태영

정을호 · 권향엽 · 안태준

오세희 • 박지혜 • 채현일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등)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다른 정보를 유추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분석될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추정해내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의 자료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비밀의 침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신이용자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검사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 신설).
- 나.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명할 수 있게 함(안 제83조의 신설).
- 다.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안 제83조의8 신설).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과 제4항"을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로, "정보제공요청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로, "갖추어 두어야"를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3항"을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를 각각 제83조의5부터 제83조의7까지로하고,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의 절차) ① 검사 (군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세청 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

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 1. 이용자의 성명
-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3. 이용자의 주소
- 4. 이용자의 전화번호
-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 ② 검사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통신이용자 정보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특정사건 수사 또는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 면(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청구서"라 한다)으로 법원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 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 또는 국세청장은 검사에 대하여 해당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특정사건 수사 또는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

- (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신청서"라 한다)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을 받게 될 전기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⑥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때에는 소속기관에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7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청구 및 그에 대한 결정 현황 등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허가한 날부터 7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83조의3(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절차 등) ①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 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법원 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청구서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고등법원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을 받게 될 전기통 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절차,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제83조의4(법원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명령)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법원, 당사자, 사건명, 사건번호 및 요청하는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83조의5(종전의 제83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원은 제83조의4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법원 및 사건번호
-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제83조의5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3조제3항"을 "제83조의2 또는 제83조의3"으로, "수사관서의 장"을 "사법경찰관, 국 세청장"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통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청구사건의 관할법원·사건번호·허가범 위
- ④ 검사가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청구서로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사법경찰관 또는 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통지유예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청구서로 관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통지유예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 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청구서로 관할 고 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통지유예허가청구 시 제83조의2제4항과 제83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 ⑧ 검사, 사법경찰관, 국세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지를 유예한 기간이 끝난 날에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⑨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 국세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서 등과

함께 통지유예허가서 등 관련 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7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5조의5제10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사기관등은 제1항"을 "법원 및 수사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83조제3항"을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수사기관등은 제1항"을 "법원 및 수사기관등은 제1항"을 "법원 및 수사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제83조의6(종전의 제8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등"을 "법원 및 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3조의2제1항"을 "제83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3조의2제5항"을 "제83조의5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3조의2제6항"을 "제83조의5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수사기관등"을 각각 "법원 및 수사기관등"으로 한다.

제83조의7(종전의 제8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등"을 "법원 및 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3조의3제4항"을 "제83조의6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등"을 "법원 및 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3조의3제4항"을 "제83조의6제4항"으로 한다.

제8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3조의8(통신이용자정보의 목적 외 사용제한)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는 경우
 -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93조제3항 중 "제83조의4"를 "제83조의6"으로 한다.

제94조제3호 중 "제83조제3항을"을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를" 로 한다.

제9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 2. 제8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 제83조의5를 위반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제5항제1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이용자정보제공의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3조의2 또는 제83조의3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와 제83조의4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②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 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 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 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 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 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 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 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 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 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 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u>제3항과</u> <u>제4항</u>의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 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 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u>정</u>보 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 <u><삭 제></u>

⑤ <u>제83조의</u>
<u> 2부터 제83조의4까지</u>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

추어 두어야 한다.

- ⑥ (생략)
-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u>제3항</u>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⑧ (생략)
- ⑨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한 결 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신 설>

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⑥ (현행과 같음) ⑦제83조의 2부터 제83조의4까지				통신	이용지	<u> </u>
⑥ (현행과 같음) ⑦	를	제공한	날부	터	7년간	비치
① <u>제83조의</u> 2부터 제83조의4까지	<u>하</u>	여야				
<u>2부터 제83조의4까지</u>	6	(현행과	같음	-)		
	7				<u>제</u> 8	3조의
	<u>2부</u>	-터 제83	3조의	4까-	<u>ス]</u>	
,						
<u>.</u>						
<u>.</u>						
⑧ (현행과 같음)	8	(현행고	나 같음	음)		
<u><삭 제></u>	<스	<u> </u>				

제83조의2(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의 절차) ① 검사(군검사,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사법경찰 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세청장(지방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감이나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을 요청할수 있다.

- <u>1. 이용자의 성명</u>
-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3. 이용자의 주소
- 4. 이용자의 전화번호
-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 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 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 일
- ② 검사가 통신이용자정보 제 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통신

이용자정보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특 정사건 수사 또는 특정인에 대 한 형의 집행과 해당 이용자와 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관 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이 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 청구서"라 한다)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 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 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 또는 국세청장은 검사에 대하여 해당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특정사건 수사 또는 특정인에 대한형의 집행과 해당 이용자와의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관한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신청

서"라 한다)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신이용 자정보 제공허가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을 받게 될 전기통신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 사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 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 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 자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⑥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국세 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때에는 소속기관에 해당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이 용자정보 제공허가청구서 등

<신 설>

관련 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7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⑦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 자정보 제공허가청구 및 그에 대한 결정 현황 등 기타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허 가한 날부터 7년간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제83조의3(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의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 한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 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 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에는 제2 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

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허가를 신청하 고, 검사는 해당 통신이용자정 보 제공이 국가안전보장에 상 당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국 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 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 러활동에 필요한 사유, 해당 이 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 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청구 서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 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고등법원은 통신이 용자정보 제공요청을 받게 될

전기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신 설>

<u>제83조의2(</u>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u><신</u> 설> 또는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절차, 폐기 및 관련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제83조의4(법원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명령)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 게 해당 법원, 당사자, 사건명, 사건번호 및 요청하는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83조의5(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법원은 제83조의4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 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수사기관등은 <u>제1항</u>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

2. 동신이용자성보 제공을 받은
법원 및 사건번호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u>날짜</u>
② 제83조의2 또는 제83조의3-
사법경찰관, 국세청
<u>장</u>
제3항
<u>স</u>]4ৃত্ <u>ট</u>
1. ~ 3. (현행과 같음)
4.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청
구사건의 관할법원 · 사건번호
<u>• 허가범위</u>
<u>③</u> <u>제2항</u>
·

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 1. ~ 5. (생략)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 위에서 정한 기간

<신 설>

<u><신 설></u>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60일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

- 1. ~ 5. (현행과 같음)
- ④ 검사가 제3항에 따라 통지 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 청구서로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사법경찰관 또는 국세청장 이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 여 통지유예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청구서로 관할 법 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 다.
- 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3항 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

<신 설>

<신 설>

<신 설>

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통지유 예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제3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 가청구서로 관할 고등법원 수 석부장판사에게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통지유예허가청구 시 제83조의2제4항과 제83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 ⑧ 검사, 사법경찰관, 국세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 지를 유예한 기간이 끝난 날에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해 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⑨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 국세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장은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서 등과 함께 통지유예허가서 등 관련 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7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경우로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통지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해당 당사자의 통신이용자정보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2.	(생	략)
	\ \	1 /

<u>10</u>
제2항
1. • 2. (현행과 같음)
⑪ 법원 및 수사기관등은 제1
항 및 제2항
1.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
지
2. (현행과 같음)

⑥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
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①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용료 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6 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 8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u>제</u>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① <u>수사기관등</u>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⑩ 법원 및 수사기관등은 제1
<u>항 및 제2항</u>
<u> </u>
· <u>④</u> 제1항 및 제2항
<u>제3항부터 제9항</u>
<u>까지</u>
 <u> 83조의6</u>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
행) ① <u>법원 및 수사기관등</u>

-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의 통지업무
- 2. 제83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접수 업무
- 3. <u>제83조의2제6항</u>에 따른 주민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 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 수 업무
- ② ~ ⑥ (생 략)
- ⑦ <u>수사기관등</u>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 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생 략)
-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① 수사기관등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
 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
 거나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 등
 을 조사할 수 있다.
 - 1. ~ 3. (생략)

1. <u>제83조의5제1항 또는 제2항</u> -
1. 41002 10 11 6 2 2 7 12 6
2. 제83조의5제11항
2. <u>1001118</u>
9 - 케O의코 레트케19素l.
3. <u>제83조의5제12항</u>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원 및 수사기관등
① 自己 天 1/1/1년 6
⑧ (현행과 같음)
제83조의7(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 ① <u>법원 및 수사기관</u>
<u>등</u>
 _
1. ~ 3. (현행과 같음)

- 4.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 관리대장과 통지유예 통보 관 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 항
- ② <u>수사기관등</u>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1. <u>제83조의3제4항</u>을 위반하여 통지관리대장 또는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 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신 설>

4. 제83조의6제4항
② 법원 및 수사기관등
 1. 제83조의6제4항
1. <u>////034_40///48</u>
 2. (현행과 같음)
제83조의8(통신이용자정보의 목
적 외 사용제한) 제83조의2부
적 외 사용제한) 제83조의2부
적 외 사용제한) 제83조의2부 터 제83조의4까지에 따라 제공
적 외 사용제한) 제83조의2부 터 제83조의4까지에 따라 제공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및 그 내
적 외 사용제한) 제83조의2부 터 제83조의4까지에 따라 제공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및 그 내 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
적 외 사용제한) 제83조의2부 터 제83조의4까지에 따라 제공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및 그 내 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 는 사용할 수 없다.
적 외 사용제한) 제83조의2부 터 제83조의4까지에 따라 제공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및 그 내 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 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목적
적 외 사용제한) 제83조의2부 터 제83조의4까지에 따라 제공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및 그 내 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 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목적 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적 외 사용제한) 제83조의2부 터 제83조의4까지에 따라 제공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및 그 내 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 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목적 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는 경우

-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 략)
 - ③ 제83조의4에 따른 수사기관 등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 3. <u>제83조제3항을</u> 위반하여 통 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신 설>

<u>L 91 71 0 4 0 11 71 0 9 L</u>
<u>경우</u>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
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83조의6
<u>.</u>
제94조(벌칙)
1. • 2. (현행과 같음)
3.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
지를
제9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
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

소체배사스소에서 사요치느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경우는 제외한다.
- 1. ~ 12. (생 략)
- 13.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

 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14. ~ 17. (생략)

⑥ (생략)

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
추어 둔 자		

- 2. 제8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 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자
- 3. 제83조의5를 위반하여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통지 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1. ~ 12. (현행과 같음) <<u>삭</u> 제>

14. ~ 1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